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 때 : 2001년 3월 17일(토) 오후 2:00 - 18일(일) 오후 5:00
- 곳 : 파주 흥원 연수원
- 준비하는 이들 : 이김현숙, 정경란, 전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용환(변호사), 이혜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카린 리(미국천우봉사회),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이대훈(영국브래드포드대학평화학)

■ 워크숍 전체 일정

<17일(토)>

Session I

- 기조발제 (pm 2:30~2:50)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 :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패널토의(pm 2:50~3:50) : 대만, 콜롬비아 / 순차통역(각 15분씩)
: Chien Hsi-Chien (Peace Time Foundation in Taiwan 총무)
: Ricardo Pinzon (Colombia) 라틴 아메리카의 양심적 징집거부운동
- 질의응답 및 토론 (pm 4:00~5:00)
- 영역별 발제 및 질의응답 (pm 5:20~6:30)
 - ① 징병제 실태와 병무비리 : 김종대
 - ②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 이해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Session II

- 영역별 발제 및 질의응답 (pm 7:30~9:00)
 - ③ 병역미필 피해자-여성과 장애인, 군대내 성폭력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 ④ 양심적 병역거부, 징집제에 의한 피해실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 작은 잔치 (pm 9:00~11:00)

<18일(일)>

Session III

- 국내외 경험나누기 및 UN관련법 (am 9:00~12:00)
<국내외 양심적 징집거부 사례 및 한국에서 가능한 대안탐색>
 - ① 국내 : 김삼석 / 국외 : Chien Hsi-Chien, Ricardo Pinzon
 - ② UN관련법 : 이대훈(브레드포드대학 평화학)

Session IV

- 대안 및 전략 토론 (pm 1:30~4:00)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 사회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징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창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정책실장, changsoo@korea.com)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보일 정도로 쟁점이 되었다. 군 경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점제도 폐지'가 '군경력에 대한 보상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남성들의 반발이 컸다. 군가산점 제도 논란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태도는 "돈 없고 백없어 강제 징집되어야 했던 힘없는 남성을 상대로 싸움을 건 여성단체의 부도덕한(?) 행태를 열렬히 비난하면서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병역기피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였다"고 이해된다. 즉 한국 남성들의 징병제 아래서 군복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는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에 대한 검토는 강제적 군복무의 문제점 해결,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제대군인들의 지위 향상과 군대 운영의 민주화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징병제의 문제점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의무병제의 모순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국 등의 국가는 지원제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징병제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징병제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병제에서도 인력비용이 상승한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징집병에 게도 민간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인력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병역의무의 불평등성이 나타난다. 징병제의 핵심은 형평성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불공평성이 두드러진다.

셋째,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자가 부족하여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현대무기체계는 높은 숙련도때문에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서 징병제는 근거를 잃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보상황, 국민의 방위의식강화,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징집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민의 방위의식은 징집제에 의해 고취되지만은 않는다. 국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기초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지닌 모병제이다. 예산 역시 앞서 살핀 것 처럼 징집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징집제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징병제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기간과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며, 징집병에 대한 훈련은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모든 징집의무자를 징집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판단하여 지원제와 징집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토국가들의 경우 지원병의 규모가 징집병을 초과하고 있다.

가치의 확산이 군대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 사회생활에 비교해서 군생활에 대한 매력의 감퇴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도 이런 현상은 이때 1880년대말부터 생겼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989년에 실시한 「장병의 의식구조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현역복무를 안하는 청년들을 행운아로 보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도 낮고, 전우와의 일체감, 상경하에 분위기,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 군인으로서 자부심도 낮다.

둘째,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강한규제나 인격을 매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셋째, 군법이나 군기유지활동이 너무 엄중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군의 현실이라고 본다.

넷째, 군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도 많으나(59.3%), 군복무의 최대목표는 시간을 때워서 성한 몸으로 제대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많다(30.2%).

이러한 경향은 장교집단의 의식성향에도 나타난다. 270명의 장교에 대한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할 생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2.9%인 35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근무하면서 고려해보겠다는 사람이 132명이고, 기회가 있으면 전역하겠다는 사람(69명, 25.5%)과 가능하면 즉시 전역하겠다는 사람(34명, 12.5%)이 38%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사병들과 장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징병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이나 사병들이 군에 대한 가치를 사회생활에 대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정세, 징집제도의 강제성, 군대의 낙후된 민주주의 때문이다.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의 변화로 국민들은 징집제도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기기 보다는 강제성 있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내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위기는 사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도의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대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이 병역제도개선과 함께 군의 시민화와 정치교육을 통한 문민우위적 통제하의 군위상정립, 나치시대의 정치적 특권화와 무조건적 굴종적인 군대청산, 군내부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사 개개인의 권익신장과 양심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인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병력규모 감축과 병역제도 전환

한국의 상비병규모는 국방부가 91년 9월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라 방위병제도가 폐지되어 70만 규모가 되었다. 병력규모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통상 적당한 병력규모는 인구의 1%를 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병력규모는 인구의 1%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규모에 대한 고정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병력규모는 정치지도자들이 군사전략적 감각에 의해 임의로 정해야 하는 숫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 통일이전 남북한의 군사력의 최종수준을 10만명으로 제안한 사람도 있다. 북한도 90년 5월 30일 발표한 5.30 군축안에서 남북한이 군축을 합의한 후 4년동안 3단계로 병력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30만 유지, 2단계에서는 20만, 3단계에서는 10만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규모의 방위력이란 병력규모통제를 통하여 소수병력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비병의 수준을 30만으로 하여 군대의 전문화를 꾀하고, 군대와 사회의 민주화로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대처하는 사회적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30만으로 감군은 그동안 북한도 주장한 바 있으므로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여 남북한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의 60만 상비병력은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통일조국의 방위에도 적합한 규모가 된다. 한국군을 30만으로 감군하고 여기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병력을 배치하면 된다.

한국군의 병력 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토국가들과 미

국 등의 병력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0.8%인데 비하여 우리는 1.7%가 된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일 경우 인구에서 차지하는 병력의 비율은 약 0.7%가량이 되어 평균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30만으로 감축한다면 결국 현재의 징집제는 해마다 18세가 되는 징집대상인구가 40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고 30만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징집대상인구를 고려하여 볼 때 복무기간이나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0만으로 감축할 경우에는 병역제도 자체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예비군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30만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로서 재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병역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장교와 하사관은 직업군인제를, 사병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군인제란 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이다.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며,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된 제도이다.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그리고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모병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애국 의식에 바탕을 둔 제도라는 점에서 용병제와 다르며 명예로운 높은 직위 등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등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업군인제와도 구분된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16만 직업군인을 유지하고 여기에 14만의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는 군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확보한다면 30만의 정예군대가 구성된다. 그리고 지원자 개개인에 대하여 능력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14만 지원병의 군복무기간은 장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군대가 민주화되고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과 군제도의 개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인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안보 개념정립이 중요하다.

향토예비군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예비군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뿐더러 예비군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피하다. 예비군을 편성하는 이유는 상비군의 유지를 비용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즉 유사시 요구되는 예비군은 평상시에도 막대한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향토예비군제는 이러한 예비군 교유의 기능을 담당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한국의 향토예비군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예비군과는 성격이 다른 기형적 제도이다.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에 따르면 예비군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상비군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예비군은 총체 전력의 일부로서 독자적인 전력을 형성하여 상비군과 협력하여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역복무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비군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선택적 지원제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비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고 예비군을 유사시 전력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향토예비군제도를 완전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별지원제를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별지원제는 현역지원과 예비병지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징집대상인구에 대한 형평의 구현때문에 필요하다. 즉 징집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 아래서 현역의 지원유인책이 되면서 동시에 유사시 전투력을 보유한 예비군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 경우 지원예비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훈련을 한 다음 일정기간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예비군 편성규모와 기간은 전투력,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병력규

모는 상비군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약 60만이면 적합할 것이다. 앞으로 징집대상인구는 약 35만 수준이므로 예비군 편성기간을 24개월로 한다면 인력수급에는 차질이 없게된다. 필요하다면 예비군의 손실보충을 위한 대기예비군을 구성할 수도 있다.

죽임을 강요하는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꿔야

현재의 병역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분명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만 감축조치는 병역제도의 구조적인 변혁을 가져온다. 병역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도 불가피하다.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원제로 전환은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로 인하여 현역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제에 의한 현재의 16만 규모를 유지하는 직업군인과 모병제에 의한 14만 규모의 사병을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의 사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 정도에서 검토한다.

둘째, 향토예비군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성격이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비대한 현재의 향토예비군을 폐지하고 지원병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예비군을 창설한다. 현역지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 복무의 의무를 지닌다. 예비군의 규모는 60만, 편성기간은 24개월정도가 적합하다.

셋째, 이러한 조치들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가 있다. 단계적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 조치가 뒤따른다면 상호군축으로 발전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냉전제도의 해소와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병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도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운동은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관점을 뛰어 넘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병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비도덕성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징병제는 지원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대만 代替役(社會役)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簡錫士皆

1999년 대만 「社會役법」 제정

暴. 非暴力

① 보수 있는 것도 바르시 하지만
② 폭력도 시용하지 말자.

1. 기본이념 :

社會役(즉 대체복무제도, 또는 代替役이라 함.)의 도입은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가치 개선 사업이기도 하다. 유럽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社會役 제도를 도입했다. 북지국가에 있어 이 제도의 장점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치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물질 추구에서 사회 공익 증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는 대만은 의료, 노약자, 산림보호, 소외지역 교육, 재해 방지, 지역 건설 등에 있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개선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社會役 도입의 원동력이다. 社會役의 도입은 兵役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군사 대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쟁이 애국심의 유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돕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희망의 병역' 즉 社會役을 도입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2. 과정

1) 저항: 주로 국방부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다. 그 이유는

↑ 미장 적대병력이 감소하니 (당시 대만도 병력도 60만)

(1) 병력부족으로 직업군인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든가. 그 후 입법원의 압력 하에 국방부에서는 '精實方案'을 추진하였고 감원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해 많은 잉여병력이 나타나 社會役제도를 반대하는 우려를 바로 해소할 수 있었다.

(2) 국군의 자질에 영향을 끼쳐 양질의 인력들이 社會役에 몰려 군인 전체의 자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그래서 국방부와 협상해서 추천방식을 통해 國防役 또는 社會役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 사회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 또는 사회 상류층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인식한다.

(4)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므로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2) 優質文教基金을 설립하여 社會役제도를 추진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1) 민간단체에서 社會役民間推進聯盟을 설립했다. 이 단체에는 장애자연맹, 중화민국 지체자 가장총회, 에덴사회복지기금, 대만환경보호연맹, 노동자 및 여성운동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2) 입법원에서 56명의 입법위원들이 '초당파社會役추진팀'을 구성했다. 병역 60 → 45 → 40만

(3) '精實方案'이 실시된 후 병력인력이 남아돌아 많은 병역 적령자들이 병역대기하게 됐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가 社會役을 추진하는 좋은 시기가 됐고 이와 함께 병역기간을 단축하는 운동도 전개할 수 있었다. 기존 2년 戰鬪役을 1년 10개월로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社會役 군복무기간을 늘렸다. (전도이르니 국방부안행위)

(4) 1997년 9월 행정원, 내정부 役政司와 국내외 학자들이 유럽에 社會役제도를 견학했다. 그 후 정부측에서 실시방안을 수립한 후 '행정원병역대체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대체역" 도입" 생각부도있어

3) 헌법에서는 '국민은 병역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社會役에 대한 언급은 없어 社會役의 추진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헌법 수정과 관련된 국민대회 대표들을 설득하며 헌법 수정 시 '국민을 병역 또는 社會役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넣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대회 폐지'라는 정쟁이 이 조항의 토론 자체를 무색하게하여 헌법 수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병역법에 한 조항을 추가해 兵役代替役이라는 명칭을 넣도록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代替役 실시 조항을 제정했다. 수정된 병역법은 일반 국방역 기간을 2년에서 1년 10개월로 단축하고 代替役기간을 2년 2개월로 정했다. 종교양심범 지원자들은 2년 9개월로 하여 병역의 공평성을 유지했다.

4) 법률 수정 후 2000년 7월에 '代替役'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은 국방역과 같고 : 형량 역시 같고 정가?

공경성도제
!!
추진제라야.

3. 대만 社會役(代替役)의 내용

(1) 代替役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不服從, 탈병, 하극상 등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2) 代替役 종류는

A: 사회치안류: 경찰역, 소방역

B: 사회봉사류: 社會役, 환경보호역, 의료역, 교육봉사역

C: 기타 행정원에서 지시한 종류.

(3) 사회상류층 클럽이 되지 않도록 代替役의 군복무기간은 국방역 보다 4개월 길다.

(4) 代替役의 대우는 현역 군인에 준 한다.

(5) 代替役의 군복무자는 일반 병역의 상해위자료, 의료보험, 숙식, 복장 등 모든 규정에 준한다.

4. 개선해야 할 문제 :

(1) 개인적인 문제:

* 군복무자는 전공에 따라 代替役을 신청 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권이 부여돼야 한다. 추첨으로 해서는 안 된다

* 代替役 군복무자는 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신분과 자주 혼동된다.

* 考試權, 차표, 비행기표 등의 할인율이 일반 군인보다 낮다.

*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 전과자는 경찰역 또는 교육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전과자 조사 방법등.

* 代替役과 봉사받는 자와의 다른 성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 군복무기간에 거주 수준의 차이.

(2) 사용자측:

* 사용자측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代替役을 값싼 노동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측에서 실단속식을 제공할 수 없어 代替役 활용을 감히 신청하지 못 한다.

* 사용자측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 內政部 役政司에서는 지역감독관을 설치하여 우수한 代替役을 지역감독 간부로 선정해야 한다.

(3) 사회:

* 국방부에서 여전히 전공에 따라 징병하는 것을 반대한다.

* 사회 전반적으로 代替役에 대한 인식이 달라 社會役도 여전히 지켜야할 기율이 있다는 것을 소홀히 한다.

軍인권위원회

<취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로서 해당 연령의 남성은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대만을 강탈하고자 부심하는 강대국 중공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 건아들은 대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 군대를 양성하는 목적은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 속에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화목한 대가족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단결하여 외부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인들도 반드시 합리적인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군대에서 피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신을 위해 권리와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다.

군대 내의 인권과 안전, 복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군인권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이다.

상처의 낙인

1995년 6월 9일, 나는 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오슝(高雄)의 쥬잉(左營)항에서 군복무중인 아들 황궈장(黃國長)이 평상복을 입고 917호 남양(南陽)함에서 물에 뛰어들어 탈영을 했으며 빨리 아들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본인이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영과정에 대한 군측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려웠으며 나는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6월 15일 중국어선이 팽후(澎湖)해의 무도우(目斗)섬 부근 해상의 해역 교차점에서 뜻밖에도 황궈장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6월 17일 국제적십자협회는 여러 곳을 거쳐 마침내 가족들에게 황궈장의 죽음을 알렸고 내가 푸젠(福建)성 취엔조우(泉州)의 스스(石獅)항으로 가 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황궈장은 사망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온몸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머리부분에 약 22센티미터의 철 침이 박혀 있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으리만큼 참혹했으며 의도적으로 살해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철 못은 비통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고 사실을 은폐하여 국민과 세상을 우롱한 군측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軍인권위원회의 탄생

군대의 위협통치에 의한 은폐 작업으로 수 십년 동안 황궈장 사건과 유사한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재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만에는 부당한 훈육으로 인해 매일 평균 1.29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으며 군측이 은폐하고 있는 중상 또는 불구사례는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인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군대의 어두운 현실을 밝혀내고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안전과 정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시켜 군인권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갈수록 힘들고 무거워지는 위원회 업무를 버티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으며 다음 단계로 군 인권카드를 발급하고 군인구조 핫라인을 개설하여 군인들이 위협이나 고통을 당할 경우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방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일부 신고 기관들은 그저 모양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도 언제나 감감 무소식이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연결해 주고 몇 차례의 도움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약하고 상처 입은 가족의 몸으로 총과 탄약으로 무장한 군대 고위급 관리의 경호대와 감시 기관의 보이지 않은 심리적 위협에 대항했으나 힘없고 고통 당한 두 손으로 어떻게 해야 특권계층의 군포와 전차를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군인권위원회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부당한 훈육과 특별 명령에 의해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육신과 정신에 남는 고통은 본인과 가족에게 있어 일생동안 떨쳐 버릴 수 없는 악몽입니다. 원래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들이 많은 사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보냈다가 아예 아들을 영영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을 하며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의 인권문제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와 같이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통스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이 또한 군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군인들의 사고 사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피와 땀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적절한 보장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자 위로가 됩니다. 만약 군대에서 정신적인 압박과 위협을 느낀다면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국민들이 망각할수록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가 냉담할수록 군대는 더욱 무지막지해집니다. 비록 우리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발휘,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그들이 대만 젊은 군인들의 미래를 진지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은 생명을 보장 받고 인격을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

1. 노동쟁권

2. 대체역 / 공익근무 / 비영리

i) 노동쟁권

ii) 이연적기반 / 신설

근인 / 신설역 / 이연적기반

대안

대안적 경우 : 근로계약 / 신설근로계약 (근로계약)

↳ 임대차근로 / 신설근로로 바뀔 수 있음.

근로계약

임대차근로 ↑

지급비 지급주체
방식 / 지급비 지급비
보통적 수단

임대차근로 / 보통적 / 지급비

78 2
(480 → 278원)

↕
국방부 대민부서.

[국방법 19년 신설근로 / 1999년 / 2007년 / 2012년]

임대차근로 / 근로계약 (1주에 1회)

↳ 보통적 / 신설근로로 바뀔 수 있음.

◎ 민간인 / 강한.

이제 대한 고관직을

대한 이데올로기 국가들은 약 20년

을 파시즘의 발전으로 도입한 것은

선출직과 동시에 사회적 규범에 따라

그리한 경우과정에 있어 자선사업은

국가적 정책과 동시에 도덕적

이 시작하게 되었다.

근래의 민간인을 증원한 것은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가 요구되었

고정되어 있어 대한 이데올로기

지원은 정치적 목적의 하나로

계속되는 인민지원, 권위주의

을 파시즘이 위한 부정 운동이

국가 필요에 따라 민주주의의

적극의 인종차 문화의 다양성을

문화적으로 이루어지 한다

한글이 시작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

Ricard Pinzon (CO activist in Colombia)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의 역사는 9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기독교와 카톨릭 등 종교계와 연계된 통치 조직들의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 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콜롬비아의 경우 강제적인 군복무 참여를 거부하는 비폭력 운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를 위한 전반적인 합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비폭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무장행동도 법의 테두리에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된다.

세계 각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의 헌법 18조에 명시된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라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토대로 양심적 징집 거부 등은 그 의의를 가지게 된다.

개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철학적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고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쟁과 갖가지 분쟁에 직접적이든 아니든 간접적이라도 개입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라 칭한다.

이에 대한 고찰내용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약 500년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사업과정에서 토착민들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도입한 카톨릭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전통을 이용하여 카톨릭을 신봉함과 동시에 스페인 국왕에 대한 충성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정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종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운 종족이 출현하게 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됨과 동시에 토착민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는 정복자들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커지게 됨으로써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군대와 민간인을 동원한 정복 운동과정은 이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고 또한 이들을 이러한 과정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요구되었으므로 점차적으로 헌법에 이러한 사항들을 첨부시켜 이를 합법화하기에 이른다.

20세기에 있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수많은 군사 쿠데타 등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군사 기관들은 통치와 통제의 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인권유린, 권위주의, 군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자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 운동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부터 이미 군사 정부들을 타도하는 운동이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이양 의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게 되며 또한 국민의 참정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각각의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의 인권에 관한 조항들이 속속 헌법에 새롭게 명시되는 등 헌법개정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콜롬비아 사례.

→ 콜롬비아 (1970-80년대 이념) → 비밀

다양한 2등~2위54 개월

④ 유산(유산) 기입 (사립(공적)성격 - 유언...)

(콜롬비아 22세 50% 22세 0.2%)

콜롬비아는 유감스럽지만 50년 이상 마약과 각종 범죄와 연계된 게릴라를 비롯한 여러 무장 조직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로 낙인 되고 있다.

만연된 콜롬비아 정부의 부패와 이러한 인권 유린 사태들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풍부하고 우수한 농수산, 광업자원을 지니고 있는 콜롬비아의 진정한 참모습 등이 커다란 타격을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게릴라를 비롯한 이러한 무장 조직들과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하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콜롬비아 안보 기관들의 활동들은 현재 인권과 평화문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화되었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진압기관등에 강제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징집 거부운동이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1993년 제정된 헌법 48조에 모든 콜롬비아의 국민은 공식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군대에 참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콜롬비아에서 군복무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18세의 대부분의 콜롬비아 남자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추첨제로 되어있는 이 군 체제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이상 받은 사람은 1년의 복무기간을 가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18개월에서 24개월사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15세, 17세 등의 청소년들이 군복무를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어 왔으나 1년 전부터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군에 징집하는 관행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군에서 복무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농촌 출신들, 흑인들, 원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추첨을 통해 군복무가 면제된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제수준에 따라 미화 150달러에서 10,000달러 혹은 이상을 세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들 청소년들이 이 금액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간혹 군대에 불러 가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무장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게릴라들은 강제적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그들 조직에 18세도 안 되는 남녀 어린이들과 농촌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자들은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폭력 무장조직에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단체는 이 운동의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의 중추적인 작업들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 교육부문
- 비폭력을 토대로 한 직접적인 행동 부문
- 정치참여 부문
- 국내 및 국외 관련기관 들과의 연계 활동 부문

이러한 운동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계몽운동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들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되며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원 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는 강제적인 군 징집에 대신하여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을 뿌리내리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2. 매스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콜롬비아^내 약수리지 22중

① 무기를 들고 싸우게 하는
② " 난징

3. 이 운동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입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비폭력, 폭력적인 분쟁 대처방안, 교육 환경에 있어서 분쟁에 대한 숙지, 양심적 징집 거부운동 등에 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국내외를 막론한 공식적인 이벤트들을 조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스니아, 터키, 크로아시아,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등을 포함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1993년 ICOM의 개최 또한 이 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이외에 1993년부터 ROLC 즉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국가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단체의 창립국가들과의 활발한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콜롬비아의 다른 국내 도시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 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콜롬비아의 군 폭력과 인권 유린

콜롬비아 내전 및 폭력은 종종 마약 밀매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좀더 본질적인 데 있다. 희생자들 가운데 막대한 수가 비전투(noncombatant) 민간인들이다. 1987년 이래, 3만5천 명 이상의 비전투 민간인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콜롬비아는 풍요로운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평등한 부의 분배로 인해 몇몇 인구 지역들은 극심한 곤핍에 시달리고 있다.

콜롬비아는 석유 수출국이자 주도적인 커피 생산국으로서 자원이 풍부하며 인구 밀도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콜롬비아는 난무하는 폭력으로 골치를 썩고 있고,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코카인 생산의 천국이 되고 있으며, 헤로인의 주요 출처국이기도 하다. 콜롬비아에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1970년 중반부터 계속되어온 대대적인 마약 밀매를 종종 지적하긴 하지만,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는 문제의 마약 거래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서 자행되어 왔다. 폭력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피투기는 경쟁의 산물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폭력은 반체제 인사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콜롬비아의 정치 문화와 급박한(desperate) 여건에서 양산된 것이다.

콜롬비아는 수십 년 간 자유당(Liberal)과 보수(Conservative)당 양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장악해 왔다. 양당간의 정전은 종종 내전과 지역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지난 La Violencia 분쟁 기간(1948-1953년) 중에 무려 1백4만5천 여 명이 살해되었으며, 전후로도 몇십 년 간 두 정당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여타의 진보적 견해들을 배제시키는 타협안을 도모하는 일에만 협력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이 헤게모니의 단물을 빠는 동안 국가부 배분의 불평등성은 악화일로를 견고 있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층 인구가 국가 전체 수입의 10% 에도 못 미치는 수혜만을 누리고 있는 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층 인구는 70%에 육박하는 국가의 부를 취해 가고 있다. 20%라는 살인적 실업률을 기록하던 지난 1999년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에 주어진 매력적인 옵션들이란 마약 거래 아니면 정치 갈등이었다. 맹렬한 반군 소탕전(La Violencia에서 연원)을 선포한 콜롬비아 정부는 두 주요 반군 세력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민족해방군(ELN)을 토벌하기 위해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paramilitary allies)¹⁾를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군소 반군 세력들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군들을 무장해제한 정당의 형태로 전환시키려던 희망은, 1985년 무장혁명군과 기타 좌파 정치 그룹의 지원하에 창설된 애국 연합(Patriotic Union)당의 멤버 2천5백 명이 살해됨으로써 무산되었다.

1999년에는 전투와 관련된 기록상의 사망자만 1천 명에 이르렀고, 최근에 무장혁명군의 공격은 더욱 빈번해졌다.

1) 준군사 세력은 대략 7천여 명(남성)에 이른다. 그들은 콜롬비아 정부군과 대지주, 다국적 기업과 마약 카르텔로부터 활동 자금 및 군사 훈련, 각종 군수 물자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민간인들이다. 콜롬비아 군대는 농민들을 게릴라 세력과 격리시키고 게릴라 세력의 활동 배후를 파괴할 목적으로 농민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도시빈민가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1987년 이래로 3만5천 명을 넘는 비전투 민간인들이 살해되거나 돌연히 “사라졌으며”, 그 대부분이 정부군 내지 준군사 조직의 소행이었다. 최근 들어 군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준군사 조직에 의한 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량 이주가 속출하고 있으며, 파나마와 베네주엘라로 향하는 피난민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반군 세력 또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지난 15년 간 1천5백만 명 -1999년에만 30만 명-이상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반군 활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반체제 인사들 - 인권 수호가, 변호사, 판사, 농민 운동가, 노동 운동가, 교사, 학생- 또한 희생되었다. 반군들은 이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의심하여 표적으로 삼았으며, 1999년에만 근 600여 명을 인질로 삼고 몸값을 받아냄으로써 반군 활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반군 측 민병대(밀리샤)와 경찰 측 살인 부대(우의 민병대) 모두가 정치 운동가와 “사회 불량 분자”로 낙인 찍은 인사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자기들의 사업을 공공연히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마약 밀매상들이 거들지 않을 리 없었다. 마약 밀매상들은 그들의 부를 기반으로 거대 지주로 발돋움하였으며, 반군 및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마약 거래상들이 정부군에 협력하여 준군사 살인 부대(paramilitary death squads)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998년 취임한 안드레스 파스트라나(Andres Pastrana) 콜롬비아 대통령은 업무 개시 직전에 무장혁명군 지도자, 마누엘 마룰란다(Manuel Marulanda)를 만나 최후의 평화 협상을 벌였다. 그 이전에는 민족해방군이 콜롬비아 민간 단체 대표들과 독일에서 회합하였다. 혁명무장군에 대한 일종의 호의적 제스처로, 정부는 남중양 콜롬비아, 약 1만6천 평방 마일에 주둔하는 병력을 철수시켰다. 1999년 말미의 짧은 휴전 기간을 이어받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민족해방군에 대해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 파스트라나 정부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원조 조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차원적 계획안인 “플랜 콜롬비아”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평화 협상이 진척되는 가운데도 갈등은 가일층 심화되었고, 2000년 1월 클린턴 정부는 콜롬비아에 대한 거액의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일괄 원조안을 내놓았다.

◀ 현 미 정책의 문제점들 ▶

미국의 정책은 모순적이다. 한편으론 인권 운동을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인권 유린에 연루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원조의 명목은 마약 퇴치일지 모르나 사실상 반군을 소탕하는 데 지원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군사적인 대결과 내전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반군(narcoguerrilla)” 이론은 반군 소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길 원치 않는 미국 정부가 콜롬비아 군을 지원할 때마다 어김없이 들고 나오는 구실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연두 교서에서, 자신의 콜롬비아 일괄 원조 계획은 콜롬비아 정부가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대체 “이번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무부의 외교 정책 FY2000에 관한 국회 연설 문건을 보면 “콜롬비아의 마약 일소 투쟁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군이 말하는 최우선적 투쟁은 바로 좌파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일이다. 근래 들어 생겨난 “마약-반군”이란 단어는 이 두 가지 전투의 의미를 합친 조어로서, 정치적 편의주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콜롬비아 방위군을 지원하는 미국 원조의 관행은 현 마약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적어도 1960년대 이래로 미국은 공산주의를 발본(拔本)한다는 명목하에 자국의 군사 전문가들(특수부대, 국제 군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각종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반군 소탕을 위한 콜롬비아의 군사 행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각종 무기와 군수 물자를 제공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찍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약 밀매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던 1989년 이래로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미국 원조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였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덕분에 말이다. 최근까지 콜롬비아 군당국도 그 목적이 마약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를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1994년과 1995년에 미국 의회는 미국 원조가 추구하는 최우선적 목표가 게릴라 소탕이 아니라 마약 일소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해외 세출 운영 채널을 통해 콜롬비아 군사 지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는 행정부와의 격심한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대규모 자금을 콜롬비아 군경의 마약 대책 지도부(DANTI)로 돌려 지원하였다. 비록 DANTI의 인권 문서에는 최근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증거의 부재가 인권 유린의 부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경고한다.

1996년 미 의회는 인권 유린에 연루된 군조직(security force units)들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일절 금지시키는 리어 법안(the Leahy Law)을 통과시켰고 행정부 역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6년에 입수된 미 정부 문서는 미국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어 있는 콜롬비아 군조직을 실제로 지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contradicting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had assured Congress to the contrary in 1994) 리어 법안이 일부 원조 계획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킨 했지만, 1998년에 이르러 1994년 이래로 중단되어 왔던 콜롬비아 군사 지원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수혜 당사자인 콜롬비아 군조직이 인권 유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기록)가 불충분하다는 미 행정부의 결정 때문이었다.

마약 퇴치보다는 게릴라 토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콜롬비아 군에 대한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콜롬비아 군은 1999년에 마약 퇴치 대대(battalion)를 창설했다. 미 특수부대의 훈련을 거친 이 군조직은 의견상(명목상)으론 마약 퇴치에 복무하는 집단이다.

1980대 이래로 미 행정 관리들은, 미국이 또다시 게릴라 소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회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마약-반군” 개념을 유포해 왔다. 콜롬비아 군 관리들 역시 마약 밀매상이 곧 반군이라는 개념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마약 밀매상과 게릴라는 그 정체성도 구별되거나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다.

마약 거래상과 게릴라는 종종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한다.

많은 게릴라들이 세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각종 사업들을 비호하듯 농민들의 코카인 재배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군의 동맹 세력인 준군사 조직의 수괴들이야말로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되려 마약 밀매를 부추기고 있는 장본인들이며, 워싱턴 포스트지마저 샘퍼(Samper) 전 대통령이 마약 밀매상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게다가 2000년 1월에는, 보고타에 거주하는 한 미군 사령관의 아내가 헤로인 밀매 혐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마약 밀매상들은 상대를 불문하고 결탁하고 보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미국 관리들은 자신들의 단계적 확대 정책(policy of escalation)이 “플랜 콜롬비아”를 지원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위시한 평화 과정 및 경제 발전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反)마약 대책은, 화학 물질로 인한 농지 및 삼림 지역의 낙엽화 현상과 농지와 가축,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포의 결과를 초래했다.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나도 군대에 보내달라!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인터뷰하러 가던 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곳은 날씨였다. 조금 늦게 도착한 나는 약속장소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로비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김형수씨(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 한신대 대학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형수씨를 연결해 주었던 다른 사람을 불러낸 후에야 로비에 다른 사람들과 앉아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목발을 짚지 않고 휠체어를 타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앉아 있는 그를 나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모르는 사이지만 쉬 만나지리라 생각했던 나의 예상은 첫 대면에서부터 빗나가버렸다.

얘기를 나누기 위해 학생회관 내 카페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형수씨는 자신보다 빠른 내 발걸음을 생각해서 거의 뛰다시피 옆에서 같이 걸어주었다. 그 날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서는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학생회관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소속 회원인 듯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비장애인 남성 4명이서 힘겹게 들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단의 높이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게다. 얼마 전 TV에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한 가수가 계단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다. 난 많은 부채감에 휩싸였다.

1. 안정적 사회진출에서 군가산점제도라는 높은 벽

정강용 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82.2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당시 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시자 가운데 차석을 차지한 높은 점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탈락하고, 실제 시험 점수 78.33을 받은 군필자가 그를 밀어내고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험에 응시한 동기생 한 명 역시 81점을 받고도, 가산점 5%를 더해 86점으로 전체 순위 5등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군가산점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13시간씩 공부하는 강행군을 한 그는 다음해인 92년과 93년에 다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가산점으로 인한 불합격이었다. 93년의 경우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그는 점수로는 합격자 45명중 28등이었지만 가산점이 적용되자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 김도현, 군가산제 비대위 '낮은시선' 자료집 中

장애인들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진출의 폭이 좁은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공간인 것이다. 특히나 요즘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직을 희망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하지만 위의 정강용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벽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나 선배들이 취업을 할 때 공무원을 많이 생각을 해요. 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도가 있고 또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머리에 먹물 들어간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공무원을 한번

씩 고민을 해보는데 대번 걸리는 게 그 군가산점제도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9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5점이거든요. 45점을 플러스 해준 거니까 100점을 맞아야 못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95점을 맞아야 플러스 45점 해버리니까 140점이 되 버리죠.”

하지만 어렵게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은 따라 할당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고민은 여성들은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강한 건 사실인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획득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할당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는데 왜 헌법소원을 하느냐라는 것에서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헌법소원이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문제가 있다 없다 간에 그 당사자가 군가산점제로 이익을 보던 안 보던 간에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보수적이고 차별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법이고 바뀌어야 할 법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다툼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서, 차별의 문제로서,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고민되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할당제 등의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조차 이러한 할당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그 후

별다른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정말 뜻밖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과 신체에 장애가 있는 남자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했던 당사자들도 그리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그 이후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했던 사이버 성폭력과 위헌 소송 제기 당사자들에 대한 위협이 한동안 자행되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여성들은 갖은 욕설로 씌어진 메일과 위협전화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물리적 폭력으로 까지 확대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폭력이었고 그 일로 인한 상처는 지금까지도 그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사이버 상의 성폭력도 주로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행되었던 것처럼, 예상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

“전화가 왔어요. 형수야 빨리 경호원 불러라. 실지로 여성들은 그 정도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들 저를 여자인 줄 알았대요. 다들 여자인줄 알고 나중에 토론회에서 장애인인줄 알았대요.”

“여성이 장애인보다 더 만만한 거 같아요.”

군가산점제도 위헌 소송이후 진행되었던 토론회나 논쟁들은 그다지 건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이버 상에서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욕설과 논쟁을 가로막는 남성들의 집단행동으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그 속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확장해 보려는 시도들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역의 의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부과되어 힘들게 군생활을 마친 군필자들과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고 싶었다. 군가산점제도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님을 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함을 그리고 새롭게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싸워나가자는 제안은

이제 조금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조심스럽게 꺼냈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나서 판정이 되고 나서 상당한 반대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을 안보였던 것도 그것은 일종의 화산폭발이 있는 후에 화산재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사라질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가산점제 하면서 군대간 친구들, 남자들 많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군가산점이 여성들하고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감성으로 바꾸면 그래도 싫다.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안 봐도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헌법소원을 하면서 설득해야 되고 획득해야 될 이론들은 설득되어야 될 것들은 정부도 아니고 이런 이성과 감성에서 오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군대보내면 이 엄마는 아들 편이에요. 누나도 아들 편이죠. 그리고 장애인 아버지도 자신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비장애인이면 군가산점제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잘 못하죠.”

“군사제도라는 것이 우리 나라 20대 청년들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어떻게 한 귀퉁이를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고민이 되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죠. 여성단체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조용했던 것도 그렇잖아요. 막 열 받은 실연 당한 여자한테 너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일단은 사회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하고 난 뒤에는 아까 제가 감성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감성이 다 표출된 뒤에는 남는 건 이성밖에 없으니까 그 때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감성이 많이 죽었거든요. 좀 논리적인 논쟁, 토론할 시기가 왔다. 딱 보고 있어요. 언제 내가 발언을 해야 하나. 군가산점 문제는 많이 바뀌었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여전히 많은 20대 남성들을 정치적으로 휘몰이 할 수 있는 파위를 가진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실제적으론.”

“장애인 할당제는 할당제고 군가산점제는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데. 모든 사람이 국가 공무원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또 국가에서 일정정도 책임 있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조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삼중적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세미나 하면서도 매일 그거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고민하지 말자. 공무원시험 본다는 비장애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티오를 주면 안되느냐. 모든 남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확대하지 말고. 아니면 군대에서 국가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 다든지. 얼마든지 제도보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또 수궁을 해요. 문제는 감정이예요. 감정. 이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국가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보상해 준다는 하나의 상징에 대한 상징적인 치료제거든요.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안 봐도 그런 부분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거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문제 될 것이 없죠. 차라리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모아서 정부하고 싸워야 되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군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들도 금기시 되어왔다. 남북의 분단과 끊임없는 적대적 감정의 재생산으로 국가안보는 우리 민족의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였고 이것을 위해 국방력의 증강은 높은 국방비와 전 국민적인 병영화로 대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제기일 수 있었기에 금기시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와 IMF 이후 경제적 불안은 이러한 높은 성역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국방력의 증강이 문제가 되었으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군사비를 줄여 사회복지비로 환원하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이러한 목소리 중에는 당연히 군대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군가산점제도 헌법소원 판결 이후 불거졌는데 너무나 말초적인 본전생각의 남성들이 그저 여성도 군대가라는 감정적 대응으로 치달으며 현재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당연히 군가산점제도는 군대가서 뺨이친 남성들을 위한 실질적 보장제도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 현재의 판결 이후 군필자 남성들이 보인 말초적 반응을 보면 군대라는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보상의 문제만으로 논의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별 남성들이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군대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군대문화의 문제나 군대내의 복지의 문제, 정치,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로 언급되어왔다. 그런데 군가산점 위헌판결 이후에 이러한 군필자 남성들이 보인 반응에서 군과 관련된 논의들은 거시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이 직접 체험한 군대경험으로 환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라' 혹은 '우리가 얼마나 뺨이쳤는지 아느냐' 등의 눈물로 호소하는 류의 글이 통신 공간을 도배하고 있는 것에서 군대의 경험의 유무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느냐 현역이나 방위나 해병대나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사이에서 차이와 위계를 만들어낸다. '군대를 다녀와야만 사람된다'와 '군대를 다녀오면 바보 된다'는 두 가지 언설들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써먹으며 이렇게 군대경험은 다시 가라면 죽기보다 싫지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가치있는 일로 구성되며 남성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3. 비단 군가산점제도 뿐만이 아니다

군대를 가지 못해서 겪는 폭력들은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별다른 뻥이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면 모두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의례 군대 시절의 경험은 빠지지 않는 얘깃거리가 된다. 그것은 군대 시기뿐만이 아니라 입대 이전, 입대 이후로 이어지며 군대를 경험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힘들었던 절절한 얘기를 들으며 일종의 부채감같은 것이 형성되며 그것에 따른 피해의식과 박탈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나라 사회에서 남자가 군대 안 간다. 인간취급 못 받아요. 사회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전체 군사적인 문화에서 소외되는 것이 강한 거고 실제 농담 삼아 우리 행정병 시켜 줘.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거든요.”

“대학 내에서도 군대가고 하면 환송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한 친구일수록 감정이 나오는데, 너는 군대안 가서 좋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고 어떻게 문제제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이제 제대했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군대 얘기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끼어 들지도 못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뭔가 힘든 일을 시킬 때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얘길 하겠죠. 군대는 사회적으로 통과의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기제만 된다면 다들 군대가고 싶어해요.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니까요.”

막상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되면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조차도 '너는 좋겠다. 군대 안가도 되서...'라는 말을 하며 군대 입대 자체를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있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군대를 다녀와서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군대경험은 대부분 반인권적이고 억압적인 기억들보다는 TV의 모프로그램에서 함께 군생활을 했던 전우들이 나와서 그 시절의 기억을 따뜻하고 재미있었던 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처럼 재미있다. 힘들고 고달팠던 기억들조차도 '억압적이었다'가 아니라 '잘 견뎠다'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인 통과의례를 치르고 그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군대 혹은 군대제도 자체의 문제로 얘기되지 못하고 모두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4. 차라리 군대에 보내달라

쓰레기 같았던 사이버 공간에서 억울하면 여성들도 군대가라는 제안(?)은 비아냥거림처럼 들렸다. 하지만 군대에

갈 수 없어서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징병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대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떨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은 차라리 군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비록 부자유스러운 몸이지만 행정처리 같은 일은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누구는 군대가고 누구는 가지 않아서 차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되 각기 처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방의 의무로 대신하자는 것이다.

“징병제도 어쩔 수 없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뭐 장애인들에게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딸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투입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인 개개인들의 문화적인 발언, 군사문화에 대한 발언들, 장애인도 군대가자. 군대에게 해줘. 편의시설 해주고 경사도 깔아주고, 해주면 우리 같게. 그런 거거든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어필 할 수 있는 기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면 간다. 여성들도 그래. 여성들은 충분히 임신에 대한 능력을 보호받으면서 여성성을 보호받으면서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가 사실 할 말이 없죠. 사실.”

“어차피 모든 국민들에게 징병제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물론 징병제 자체를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처럼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충분히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꼭 그렇잖아요. 전방부대를 책임진다고 해서 군사가 이기는 게 아닌 것처럼 여자도 공익근무요원처럼 교사가 많이 딸린다든지 보육사가 많이 딸린다든지 하면 그런데 투입이 되면 되는 거고 장애인들도 실지로 장애인들이 총칼은 못 들지만 컴퓨터도 다룰 수 있고 다 하거든요. 다 하잖아요. 전략연구소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직능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우리 나라의 군사문화는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오로지 20대의 건장한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군사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지 않고 군대자체도 분명히 차별적인 거예요. 사실.”

5.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다

물론 전술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렇게 징병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꺼내놓는 건 현재 장애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항상 장애인들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거두어야 하는 보살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다. 보살핌의 대상으로써 모두가 군대에 가야만 하는 짐을 그냥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에서 당연한 한 몫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보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의 창출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소득의 소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의 대상이지 창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애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업무에 봉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능력껏 우리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구나. 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거지. 지금 뭐 장애인과 더불어 삽시다. 이런 어떤 수세적인 관점은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수세적인 관점이 없어져야... 사실 전략적인 연구나 지형적인 연구 이런 거는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권력이 이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애인들은) 사회에 자기를 많이 끼워 맞추는 스타일이 강하지 그것들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경험들, 자기 존중감을 많이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 제가 군가산점을 장애

인이 공식적으로 걸었던 이유도 나를 한 번 보고 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게르니카(연세대 장애인 동아리)도 장애인 주도적으로 오버를 했던 것도 사람들이 이게 권린지 이게 자기의 것들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학교 들어왔어도 학교 그냥 받아줘도 고마워해요. 학교는 고마운 존재예요. 장애인들한테 있어서. 고마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아무리 말해도 고마운 존재예요. 고맙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전까지. 그거를 보여주는 작업을 참 많이 했었죠. 그것이 말로써 쉽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강하죠. 그래서 저희 동아리나 장애인 쪽에서 이런 명제가 있어요. 비장애인 10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장애인 1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정도의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군가산점 소송도 피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요즘 사회에 누가 군가산점 했다고, 물론 갈구긴 하겠죠.”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의 시각은 장애인들이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해왔다. 보살피주는 입장이고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은 이렇게 주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6. 자신의 얘기들

그렇게 주체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형수씨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이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교육과 집안 내의 문화적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한다. 항상 도움 받아야 하고 보살피 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똑같은 인간으로써 조금 불편한 신체를 타고 난 똑같은 인간으로써 부모님은 그를 키웠다. 학교 교육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받았다. 이렇게 자란 그에게 소수자인 장애인들이 살기엔 너무나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훨씬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는 억울한 일로, 차별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 자체가 운동체데. 운동의 결판데... 저는 이쪽 장애인이나 이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싫었어요. 왜냐면 아니까 문제가 뭔지도 알고 해결책이 뭔지도 알고 어떻게 움직이면 해결되는지 다 아니까. 20몇 년 동안 장애를 갖고 살면서 부모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헤쳐왔기 때문에 알죠. 뭐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쪽 쳐다보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쳐다보려고...”

“우리 부모님이 더욱 더 운동하시는 분들이예요. 우리 집안 자체가 각자 책임지자 예요. 완전한 자유방임. 그게 더 무서워요. 아들이 데모하면 이유가 있겠거나 잡혀가면 잡혀갔겠거나. 설명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머니도 뭐 저 키우면서 투쟁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학생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머리를 잘 굴려서 오버하지만 마라. 잡혀갈 때 잡혀가고 전경이 때릴 때 때리지 부화뇌동하지 마라. 이런 게 저희 어머니의 그거지 뭐 오히려 적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빠르시니까. 이해가 빠르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판단을 잘 하시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니가 그만큼 선배들한테 받았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가 온 거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몸 상하고 이런 걸 안타까워하시지만 개념적으로는 더 독려하시는 편이예요. 우리 한국의 장애인의 특성이 뭐냐하면 자기 개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뛰어돌지를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뇌성마비면 뇌성마비 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사회 참여적인 게 많은데 한국의 부모들은 일단 자기 자식만 먼저 재할이 되고 가능해지면 입을 닦아 버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교육의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집안 자체의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장애인 김형수가 김형수고 둘째 아들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거든요. 그냥 장애인 김형수가 김형수예요. 보통의 엄마들이나 부모들은 쉽사리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꿈은 변치 않거든요. 내가 장애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어머니도 같죠. 같은데 개념이 다르죠. 장애는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 뭐 비장애인에 가깝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성들이 여성해방을 하려면 남성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사장도 하고 이런 거하고 지금의 일반 장애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의식구조는 똑같은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대학교 와서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그거예요. 장애인들이 대학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아실현이나 학문적 욕구가 강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분상승이라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대학이라는 거 자체 그리고 석사, 박사, 교수라는 거 자체 그리고 학점이라는 거 자체가 나의 모든 결점과 약점과 모든 것들을 커버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해수욕장 데리고 가면 해수욕장 잘 안 데리고 가잖아요. 니 맘대로 놀아라.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쪽 교육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날 안 부끄러워하니까 나도 나를 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징병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을 혹은 집단을 만났다.

실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우리의 운동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에서 무척 괴롭고 아팠다. 또한 징병제의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사주의 전반의 문제라고 할 때 그의 표현대로 어디서부터 구멍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며 계속 이어질 고민일 것이다.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아직까지 군사안보와 국방력 증강이라는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철벽같은 성이라도, 그것은 꼭 존재해야만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되더라도 그것에 의해 고통받고 차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고쳐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점진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화해무드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군사력 중심의 안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 소송을 계기로 군대 문제에서 항상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도 자신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멍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군사제도와 징병제에 짓밟힌 양심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pporco@hanmail.net)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거부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반감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성인이 된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양심이라니? 대체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다면, 의무를 받아들이고 군대를 간 이들은 양심이 없는 이들인가? 혹은 병역 거부자들 전체에서 ‘이들’에게 유독 ‘양심’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뇌이게 되었다.

이후 이들을 다룬 읽을 거리를 접하면서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있으며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제 7일 안식교등의 종교단체들이 이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만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양심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

양심은 개인의 정신적 판단과 인격적 존재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양심형성-결정-실현을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한국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받을 수 없으나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제한 받을 수 있다. 즉, 이것이 표출되는 상황이 특수한 법적 이익(징병제와 같은)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하는 내심의 자유이지 현실의 자유는 아님을 의미한다.

분단상황인 한국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에 준하는 다른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의무자책을 지우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게된다. 신성한 의무라고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20세 이상의 남성이면 누구나 져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에 준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부자는 징역에 대한 전과를 가지고, 평생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워치타워협회는 현재 1400여명 정도의 신도들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1) 사회계약

의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어야 하는 논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의무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무를 전제할 때 우리는 개인과 타인, 이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를 떠올리게 된다.

루소는 약탈적 전쟁상태에 직면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보호받는가를 인간 존재 방식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장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각 개인간의 계약이 필요하고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양도

한 대상이 바로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다시 양도받은 것을 개인에게 보장하는 식으로 되돌려준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양도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일정한 교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전면적 양도의 조항이 부과하는 평등의 기능으로서, 자기자신을 위해 희망하는 것을 타인을 위해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선 자기자신을 위해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타인을 위해 어떤 것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태면 내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병역을 희망한다면 동일하게 이는 타인을 위해서도 희망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 특정한 의무가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신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킨다면 이를 거부한다면, 단지 거부한 이가 다른 이에게 병역의무를 요청할 수 없을 뿐이다.

반대로 병역의무를 했거나 할 개인은 자신이 희망한다고 해서 집총을 거부하는 이에게 자신과 동일한 의무를 희망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이는 거부자를 위해 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거부자에게 피해를 주지않을 다른 동일한 의무를 희망할 수는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2) 법적 조화

위의 논리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양심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 의무를 놓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1) 이익형량의 원칙, 2) 규범조화적 해석등이 있다. 이익형량의 원칙은 일정한 규제가 양심에 대하여 가하는 부담과 그 규제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양심규제의 이익 내지, 필요성을 측정해야 한다.

규제의 이익이 절박하거나 압도적인 경우, 면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심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방법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에 의해 국가의 세속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징병을 통한 국가이익은 양심상의 반대론자를 강제집행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근무제도를 예를 들 수 있다. 독일은 BGH(독일의 최고 유권해석기관)는 국민의 집총거부권을 인정하여 집총거부권을 주장하는 이에게 대체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법률사이 갈등을 최대한 줄이며, 양자의 타협을 추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규제의 이익은 징병제도 자체의 안정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대체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이를 활용하거나 군대기피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경험의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징병제내의 불평등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체봉사제의 도입은 군대의 위상과 운영전반에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병력인원확충이나 군대기피를 위한 활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종교적 징집 거부자는 년 150여명이어서 병력인원확충에 문제는 없으며, 소방관·환자관리등·재해복구등의 고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에 군대기피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도부터 대체근무를 시행한 대만에서는 국방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원자가 미달되었다고 한다.

진짜 vs 가짜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개인 인권에 대한 직접적 억압상황인 '종교적 양심 거부자'의 문제와 더불어서 징병제도가 재생산하고 있는 또다른 폐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일상적 통제메커니즘과 배제에 대한 접근이 그러하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을 이유로 징병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 단체들이 이단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살상 거부에 대한 양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종교적 '이단'의 논리가 '진짜/자신의 종교'를 내세우고 이에 따라 다른 신념들을 '가짜/타종교'로 평가내리고 배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수자 배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단논리의 하나인 집총거부의 신념은 로마시대 초기 그

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유포된 것이었는데, 로마의 국교통합화 이후로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사라진 것이다.

사실 이러한 통제와 배제는 '종교적 양심거부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지만 군사제도를 둘러싼 배제와 불평등은 일상속에서 항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사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상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신체적 등급분류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군대생활을 했거나 면제된 이들 혹은 여성들은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일상속에서 배제되거나 항상 듣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양심’개념의 확장을 위하여

미국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영역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이는 양심이 인간 '개인'의 내심이자 자기존재의 근거라고 할때 양심이 표출된 형태를 종교형태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welsh판례(1970)는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학습 후 전쟁은 악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 경우,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진실되고 심오한 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면제 자격을 인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여호와와 증인이 말하고 있는 집총거부권은 종교적 교리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리가 폭력과 살상에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다. 고로 양심적 거부권은 종교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반전권이나 살상거부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80년대 전방임소 거부투쟁의 경우와 같이 비록 종교적 양심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동족간의 전쟁준비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양심또한 징집거부권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동일한 양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이들이 병역의무를 행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재생산되는 사회적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0년이 넘는 세월은 결코 현실의 적과 이에 대비키 위한 물질적 군대만을 재생산한 것은 아니다. 정작 군대와 징병제의 효과는 가상의 적을 상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나 표현을 제약하는 집단적 규율상황의 연장이며 이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규율상황의 재생산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선배가 후배를, 남자가 여자를,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정상인이 비정상인을, 진짜가 가짜를 배제하고 억압하는-에 이바지하며 이는 개인의 양심을 집단과 조직의 논리로 대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적 규율상황에 동참하는 이들은 조직논리의 가해당사자이며 보상자인 동시에 바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병역특례제도 관련 초벌 보고서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alterite@jinbo.net)

□ 병역특례제도 개요

○ 병역특례제도로 알려진 대체복무제도의 본래 명칭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의 목적에 대해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토록 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병무청

○ 그 동안 병역특례대상분야는 방위산업, 전문연구활동, 공중보건 등 극히 제한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91년 병역법개정과 함께, 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됨. 당시 정부가 내건 취지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업종 산업체가 겪는 인력난을 징집대상인력 중 잉여인력을 투여해 해소한다는 것이었음.

○ 현역대상자의 경우 학력별로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편입대상으로서 매해 병력수급상황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며(현역병 징집 후 남은 잉여인력 만큼 편입) 3년 간 복무하게됨./보충역소집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기술자격증 없이 지정업체에 취직하면 편입되는 것으로 인정되며(제조 및 생산분야, 건설공사 현장분야, 선박승선분야 등) 인원제한이 없고 28개월간 복무하게됨.

□ 병역특례와 관련된 문제점.

○ 산업기능요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인격, 노동권 침해

- 병역특례제도상 지정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면 특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다시 군대에 입대해야 함 (지정업체에서의 3개월 근무를 현역 및 보충역 1개월로 환산한다고 함. 예컨대, 2년간 특례 지정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되면 거의 2년간 다시 군 생활을 해야함.

- 이 같은 제도로 악용해 사측은 해고라는 암묵적 위협을 바탕으로 낮은 임금과 과다 노동, 인격적 심리적 침해를 강제할 수 있으며, ‘해고=군대’라는 인식이 강한 병역특례 노동자들 또한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음.

“금속산업분야 특례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라는 이름으로 보통 1년 동안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다. 결국 4년 동안 복무하는 셈이다.”

“특례기간동안 판짓(회사 눈에 벗어나는 일)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벤처업체들은 야근, 철야가 일상적인데, 월급은 쥐꼬리만하다. (월급 작다고 불평하면) 군대안가고 여기서 이렇게 호강하는 것 만해도 그게 어딘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일 이판 식으로 하면 당장에 군대 보내버린다고 호통...”

○ 노동조합 활동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

-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는 징집 대상자들도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병역특례 대상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최근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은 벤처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2000년 2월 9일 조합을 설립했음. 2000년 5월경 쟁의를 통해 임금문제와 불법 파견업무²⁾에 대해 문제제기 해 단체교섭이 타결됨. 그러나 11월 28일 조합 간부 4명이 군사훈련(병역노동자들에게도 복무 중 일정기간동안 군사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받는 동안 병역특례선정 취소 신청을 하여 11월 28일자로 병역특례업체 취소 허가 처분을 받게됨. 회사의 취소신청 이유는 경영악화와 사업전환이었으나 2000년 상반기 재무재표와 상업등기를 확인해보면 멀티데이터시스템은 매출과 수익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정보통신업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라는 지정사업성격 또한 바뀐 것은 없었음. 노동조합DMS 사측의 병역취소신청을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원직 복직 투쟁을 진행중임.

○ 지정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서의 비리가능성

- 지정업체는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으나, 병역특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정업체 선정은 병무청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병무청의 고유권한이 매우 강력함.

- 지정업체가 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 해소 및 세무상의 이득이 있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지정업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IT)계통의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인력확보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해마다 병무청에 지정업체 선정을 무더기로 요청한다고 함.

→ 결국 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비해 실제로 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기업들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정업체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뒷거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있기도 함. : 인터뷰를 통해 들은 사례를 소개하면,

“대기업은 근본적으로 지정업체가 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이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지정업체로 선정된 B라는 중소기업과 모종의 거래를 맺어 B업체가 병역특례자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상시에는 A회사에서 일하다가 병무청 조사가 나오면 그 때에만 B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미고 ...”

“지정업체로 선정된 산업분야와 무관하게 돈 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원래 파견업무는 불법인데, 말 안 들으면 당장 군대가라고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한다 ... 나중에 병무청에서 적발되면 우리들만 손해본다. 파견업무를 강요한 기업은 벌칙금 얼마에 지정업체 선정 취소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다시 군대에 끌려가야

2) “병역특례직원이 파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가 병역특례업체여야 하면, 파견시 이를 병무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파견이 이루어졌을 경우 병무청에 의하여 발각이 되면 병역특례 노동자에게 그동안 얼마의 시간을 병역특례로 일했느냐에 상관없이 바로 입대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불법 파견을 나갔다는 이유로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노조는 직원보호와 법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법 파견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파견을 철회시켰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미움을 받더라도 그나마 불법 파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수많은 회사들에서 힘없는 병역특례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파견을 나갈 수 밖에 없으며, 직장을 옮겨야 하는 부담감과 자기 외의 병역특례직원들에게 피해줄 것이 두려워 쉽게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